

2012년 9월 7일 금요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발행인: 정영하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전 화: 02-789-3881~6

팩 스: 02-782-0135

인터넷 홈페이지: www.mbcunion.or.kr

비상대책위 특보

김재철 측은 불법사찰 증거인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김재철의 MBC' 가 직원과 그 가족, 외부인들까지 불법 사찰한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회사는 이를 전(5일) 저녁 사내 계시판에 노동조합이 문

제를 삼은 불법사찰 프로그램의 운용을 잠정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토록 요구해도 거부하던 불법사찰 프로그램의 작동중단을 위한 비밀번호를 친절히 가르쳐 주었다. 단 하루 전만해도 회사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뿐이라 고 오리발을 내밀던 때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오리발 내밀다

뒤늦게 야비한 발 빼기

이제 바로 김재철 체제 하의 MBC의 진면목이다. 김재철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문제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처럼, 그 부역자들도 불법을 저지르고도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다 뒤늦게 진실을 깨닫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이다. 한치 앞도 분간하지 못하는 무능한 MBC의 현실이다.

이미 10년 징역 가능 범죄자, 은폐시도 소용없어

하지만 이미 상황은 늦었다. 당신들이 MBC 직원 및 그 가족, 작가와 프리랜서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USB 저장파일 등을 수집한 그 순간 당신들은 범죄자가 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서버 훼손 등

증거인멸 시도 용납하지 않을 것

조합은 회사측에 경고한다. 이미 중대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 또 다른 범죄를 추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불법사찰에 이용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삭제 명목으로 무려 석 달 반 동안이나 회사에서 불법 수집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서버를 훼손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이라는 또 다른 중대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당신들이 증거를 은폐하려 해도, 조합은 이미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놓은 상태이다.

구성원 감시용 고화질 CCTV도 즉각 철거해야

조합은 불법 사찰프로그램 이외에도 보도국과 시사제작국 등에 중설한 고화질

CCTV도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사가 직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고화질 CCTV, 그것도 16배 확대 기능까지 갖춘 CCTV를 설치한 것 또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총책임자 김재철이 즉각 물러나야 할 중대사안

김재철 사장에게도 충고한다. 당신이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이번에 저지른 짓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웬만한 언론사 사장이라면 이번 불법사찰 프로그램 설치만으로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중대 사안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만신창이가 되기를 원하는가. 얼마나 더

나 더 오랫동안 악명을 떨치려고 하는가. 이제 그만 오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검찰은 신속한수사로 관련자 전원 엄벌해야

마지막으로 검찰에 촉구한다. 이번에 회사가 저지른 불법사찰의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 회사에서도 사내 계시판과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들의 자료 수집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자백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이유가 전혀 없다. 고소장이 접수되는 그 순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일벌백계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방문진, 27일 정영하 위원장과 김재철 불러 의견 청취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오는 27일 정영하 위원장과 김재철 사장을 상대로 MBC 사태에 관련한 입장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문진은 진상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노사양측의 견해를 듣는 사실상의 청문 절차를 27일 하루 안에 갖기로 했다. 27일 방문진의 견해 청취는 정영하 위원장을 먼저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어 김재철 사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식으로 진행된다. 방문진은 이에 앞서 다음 이사회인 13일에 김재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사측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다음 주인 20일 김재철의 업무보고를 듣기로 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김재철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영터리 부실감사 결과를 다시 보고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철 측의 교활한 '사찰 프로그램 삭제' 책동 사찰 프로그램 삭제 전에 증거자료 '로그폴더' 복사해야

김재철 일당이 구성원들에게 프로그램 삭제 방법을 공지한 이면에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하고 물타기에 나선 것과 함께 구성원들의 PC, 노트북에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몰래 수집한 정보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따라서 불법 사찰의 증거인 로그폴더를 증거로 남겨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법기관에 증거제출 위해 로그폴더 남겨둬야

먼저 Ctrl+Alt+M을 눌러서 팝업창(최신업데이트패치/환경설정/종료)이 뜨면 Trojancut이 설치된 증거이다. 이때, 종료를 누르면 암호창이 뜨는데 회사에서 알려준 암호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삭제된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삭제될 경우 증거자료인 로그폴더도 지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설치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로그폴더를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작업해야 한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C:\Program Files\TruecutSecurity\내에 log폴더를 폴더 째로 선택하여 다른 폴더나 이동식디스크에 복사

-설치가 되었는데 폴더가 보이지 않을 경우:

windows xp의 경우: 윈도우 탐색기-도구-폴더옵션-보기-보호된 운영체계 파일 숨기기 체크해제/숨김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체크

windows 7의 경우: 제어판-모양 및 개인설정-폴더옵션-보기-보호된 운영체계 파일 숨기기 체크해제/숨김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이브표시 체크

*복사가 되지 않을 경우, 윈도우 부팅 시 안전모드로 부팅 (부팅 시 F8버튼을 계속 누르면 "안전모드로 부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하여 위의 방법대로 실시한다.

김재철 측은 중대 범죄인 '불법감청'을 몰래 해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극악무도한 불법감청"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방송통신 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박경신교수가 김재철 측의 불법 사찰 행위를 법적으로 분석한 글을 보내왔다. 박경신 교수는 김재철 측이 몰래 설치한 '사찰'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노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잘못"이라는 말로 김재철 측의 심각한 범죄 행위를 지적했다. 다음은 박경신교수가 보내온 글입니다.

징역 10년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MBC의 트로이케트 설치에 의한 직원들의 컴퓨터 통신 내용 취득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상의 감청에 해당하며 최고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아래 관련조항)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다는 다른 방송사의 보안프로그램도 역시 사전에 키워드가 무엇인지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역시 '동의 없이' 통신내용을 지득하는 것 이므로 감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회사와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 보안이 부실하다거나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거나 하는 비판은 잘못된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이다.

동의 없는 트로이케트 옵션 사용은 불법감청

트로이케트 자체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어서 무언가 MBC의 행위도 불법성이 없는 정상적인 사용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1)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2) 옵션을 활성화한 행위는 정상영업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만들어버린다. 트로이케트는 정상적 상태에서는 컴퓨터가 정상적 사용상태가 아

닐 때의 정보이동만 기록하는 것이고 옵션이 사용자 모르게 활성화되는 시점부터는 정상적인 사용일 때의 정보이동을 사용자 모르게 모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결국 통비법 상의 감청기능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닥치는 대로 들여다본 극악무도한 불법감청

직원들의 회사 컴퓨터에 몰래 설치되어 그 컴퓨터의 외부로 나가는 모든 통신을 기록한 것도 그 자체로 명백한 감청행위이다. 감청은 지득되는 정보가 업무 관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업무관련이라고 할지라도 통신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지득한다면 무조건 감청에 해당된다. 게다가 업무관련이 아닌 정보도 틀림없이 기록되었을 것이므로 위 논의에 관계없이 명백히 감청이다. (회사 컴퓨터에서 왜 사적 통신을 하는가라는 반론? –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컴퓨터를 지급할 때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의 사적통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더욱이 직원들의 집 컴퓨터에도 몰래 설치되어 그 컴퓨터의 외부로 나가는 모든 통신을 기록했다는 것은 극악무도한 행위이다. 당연히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정보가 대다수였을 통신까지 취득한 것은 명백한 감청이다.

통비법상 인가도 안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을?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유출도 한 것이며 과태료 5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나 통비법 위반이 훨씬 더 큰 잘못이다. 트로이케트 프로그램

이 실제 이렇게 원격으로 사용자몰래 깔릴 수 있다면 감청설비에 해당되는데 회사가 통비법 상의 인가를 받았는지 궁금하다. (제10조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기관과 인가절차) ①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통신비밀보호법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 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대검찰청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관심, "문제 있는 것 같다"

김재철 측의 엄청난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검찰청이 신속한 진상 파악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직속인 사이버 범죄수사단 관계자는 김재철 측의 무차별 불법 감청이 처음 폭로된 직후인 지난 5일 노동조합에 전화를 걸어 "심각한 문제 가 있는 것 같다"며 사태 파악에 착수했다.

전대미문의 중대범죄 저질렀다는 반증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사태 파악에 신속하게 착수한 것은 김재철 일당이 자행한 일이 전대미문의 중대범죄일 수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불법과 범죄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어제(6일) 회견에서 이 사실을 공개한 조합 이용마 흥보국장은 "사측이 은밀히 사찰을 자행하느라 법률적 자문을 얻지 못한 모양"이라면서 "사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뒤틀게 깨닫고 부랴부랴 무마하기 위해로그 기록을 무단삭제하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조합은 김재철 측의 증거 인멸에 대비해 상당한 자료를 이미 확보해놓고 있어 김재철 측이 무모한 시도에 나설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김재철의 불법 감청·사찰파문 일파만파 조합 규탄 기자회견, 검찰에 고발

김재철의 변태적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가족, 지인, 취재원을 포함한 MBC 구성원들의 PC에 몰래 감청 프로그램을 깔아 운영해 온 김재철의 불법 사찰이 마침내 꼬리를 밟힌 것이다. 이 광범위한 불법 사찰에는 이메일, 블로그, 메신저의 사적인 내용, USB 전송 자료가 모두 포함된다. 심지어는 한 조합원의 수년 간 써온 일기까지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메일, 블로그, 메신저, USB 전송 자료를 포함하여 MBC 구성원들과 가족, 친지들이 사용하는 PC로 들어오고 나온 모든 자료들이 사용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측으로 전송되어 서버에 저장돼 온 것이다.

정영하 위원장, "방통위도 즉각 조사에 나서야"

심상치 않은 사태 전개와 관련해 노동조합은 어제(6일) 11시 30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재철 측이 이 같은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엄중한 경고에 나섰다. 회견에서 정영하 위원장은 "불법 사찰 행위가 조합에 포착된 것은 이미 8월 초"라고 공개했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불법 사찰이 "김재철이 구성원들의 생각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파업 중에 위원장 메일을 들여다봤다면 조합의 향후 계획까지 다 가져가 훔쳐 본 것"이라며 사측의 비열한 행태를 규탄했다. 또한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10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



회(이하 방통위)의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용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번 불법 사찰이 방통위가 용인한 사항인지, 김재철의 독단적인 추진인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방통위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재철 안광한 등 책임자 6명 검찰에 고발

조합은 회견에 이어 서울 남부지검에 김재철 일당의 불법 사찰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김재철과 부시장 안광한, 경영본부장 조규승, 기획홍보본부장 이진숙, 감사 임진택, 정보시스템 실장 차재실 등 6명이다. 당시자 동의 없는 악의적인 프로그램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해당 죄목은 벌금형이 따로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조합의 법률대리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신인수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소명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압수 수색과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면서 검찰은 즉각 서버 압수수색과 피의자 구속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재철, 안광한, 임진택, 조규승, 이진숙 구속 수사해야 증거인멸 막기 위해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

조합은 무차별 불법 감청과 관련해 사장 김재철, 부사장 안광한, 감사 임진택, 경영본부장 조규승, 기획홍보본부장 이진숙, 정보시스템실장 차재실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죄목은 불법 감청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비밀침해죄 등 4가지다.



불법 감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이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형법상 비밀 침해 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6명은 이 4가지 혐의가 실체적 경합

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다.

다음은 조합이 무차별 불법사찰을 저지른 김재철 일당 6명을 고소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의 핵심 요지를 발췌한 것이다. 고소장은 조합의 법률 대리인인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가 작성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중대한 범죄임에 비춰 6명에 대한 구속 수사와 결정적 증거자료인 서버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고소취지

1. 피고소인 김재철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대표이사, 안광한은 부사장, 조규승은 경영지원본부장, 이진숙은 기획홍보본부장, 임진택은 감사, 차재실은 정보시스템실장으로서 재직하는 자입니다.



신인수 변호사

2.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5월 중순경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내 데스크탑, 사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노트북, 직원들의 가정 내 PC에 '트로이컷' (TrojanCut)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습니다.

3. 이처럼 당사자의 동의없이(= 당사자들 몰래) 설치된 '트로이컷'을 사용하여 피고소인들은 MBC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① 이동저장장치(USB), ② 인터넷 기록, ③ 지메일, 한메일을 포함한 모든 메일의 본문과 첨부파일, ④ MSN 메신저, 네이트온 등 사적 메신저 내용과 여기에 첨부된 파일을 회사 서버로 전송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고 채록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은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전기통신을 감청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제16조 제1항 제1호(벌칙,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병과)를 위반하였음이 명백합니다.

동시에 트로이컷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MBC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비밀을 침해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제71조 제9호, 제11호(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위반하였습니다. '트로이컷' (TrojanCut)이라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MBC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이미일, 메신저 등 전자기록의 내용을 알아냄으로써 형법 제1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도 범하였습니다.

5. 귀 검찰청은 피고소인 김재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유출과 관련 수 차례 압수 ·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명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유출에 대해서도 3차례 걸쳐 압수 · 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며, MBC 구성원 1,000명,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2,000명 이상의 인터넷 기록이 불법유출된 이 사건의 경우는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당연히 압수 · 수색영장이 청구되어야 합니다.

6. 한편 피고소인들은 후술하는 것처럼 회사 서버에 보관된 불법수집 자료들을 임의로 폐기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

7. 이처럼 피고소인들이 범한 전기통신 감청행위는 '징역형' 밖에 없어 그 범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소인들이 불법수집 자료들을 폐기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5월 중순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내 데스크탑, 휴대용 노트북 직원들의 가정 내 개인PC에 '트로이컷' (TrojanCut)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① 이동저장장치(USB)에 복사한 파일들, ② 인터넷 기록, ③ 한메일, 지메일을 포함한 모든 웹 메일의 전송 내용, ④ 네이트온 등 사적 메신저 내용과 여기에 첨부된 파일을 회사 서버전송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고 채록하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5월 중순경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내 데스크탑, 휴대용 노트북, 요컨대 MBC 구성원과 그 가족들 수 천명이 사용하는 USB 파일을 복사하고, 사내 웹메일은 물론 구글/다음메일의 본문내용까지 지득하였으며, 블로그 및 메신저 내용까지 훔쳐 본 것입니다. 심지어 집에서 가족들이 개인 컴퓨터로 다운받은 문서나 영화파일까지 회사의 특정서버로 전송되어 불법적으로 감청되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기통신을 감청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형법상 비밀침해 죄를 범하였음이 명백합니다. 이에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의 전기통신 감청의혹을 명확히 규명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구속과 압수수색의 필요성

가. 범죄의 중대성

앞서 본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이 병과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은 대부분 민간기업의 과실에 의한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은 ① 공영방송 MBC에서, ② 고의로 저질러진 계획된 범죄 행위입니다.

1,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MBC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유출되어 지득/채록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나. 증거 인멸의 우려

형사소송법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

현재 피고소인들은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내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전기통신 감청과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

되자 2012년 9월 5일 사내 게시판을 통해 회사가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것입니다(증 제6호 사측의 사내게시판 게재문).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삭제할 경우 회사 서버로 불법 전송되어 채록 중인 개인정보들까지 일괄적으로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고소인들이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수 · 수색 및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합니다.

다. 정의와 형평의 이념

귀 검찰청은 피고소인 김재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압수 · 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 사장 1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관련 수 차례에 걸쳐 압수 · 수색영장이 청구되었다면, MBC 구성원 1,000명,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2,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유출된 이 사건의 경우 당연히 압수 · 수색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KBS를 비롯한 대다수 공기업 경영진의 판공비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 MBC 사장 1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가 MBC 구성원 1,000명의 개인정보 유출보다 심각하다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잔대, 상대적으로 느슨한 잔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농후한(증 제6호) 이 사건에서 압수 · 수색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결론

피고소인들은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MBC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비밀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메일, 블로그, 메신저 본문과 첨부파일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개인정보가 송두리째 회사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파업기간 중 고소인 강지웅의 일기인 파업일지도, MBC 구성원들의 아들과 딸들이 컴퓨터로 작성한 일기도, 다운받은 영화도,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적 대화도 모조리 회사서버로 전송되어 지득/채록되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는 구체적으로 소명되고 있고, 진실을 두려워하는 피고소인들은 당황한 나머지 증거를 인멸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0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소인들을 구속하고,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고소인들을 포함한 MBC 구성원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채록된 회사 서버를 신속히 압수 · 수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일당, 무차별 불법감청 공동정범 가능성

“회사차원 결정” 이미 고백, 혐의 입증 어려움 없을 듯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설 경우 MBC 구성원들을 상대로 충격적인 무차별 불법감청을 자행한 총 책임자를 누구로 밝혀낼지가 관심사다. 사내는 물론이고 구성원들의 가정 내 PC까지 감시할 생각을 했다는 전 정상적인 기업체의 사내 보안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형 이슈로 부상했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비교할 때 그 수법이 매우 악랄하고 대담하다는 점에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지 그 배경을 놓고도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모든 의혹을 풀 열쇠는 무차별 감청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에 이르게 된 의사 결정과정일 것으로 보인다. 김재철 일당이 중거 인멸과 함께 사건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프로그램을 설치한 의사 결정과정은 김재철, 안광한, 임진택, 조규승, 이진숙, 차재실 등 관련자들의 가담 정도와 범죄 혐의의 경중을 가리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전망이다.

불법감청 공모하고 실행한 공동정범 가능성

하지만, 김재철 측은 그들 스스로 이 무차별 감청 프로그램 설치가 실무자들의 실수가 아님을 이미 고백했다. 두 차례 <회사특보>를 통해 이 프로그램 설치가 회사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밝힌 점으로 볼 때 김재철을 비롯한 임원급들의 책임을 부인하기가 어렵게 됐다. 실무 책임자인 차재실 정보시스템 실장이 ‘회사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한 건 실제로 결정과 지시를 내린 윗선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관련 임원인 조규승 경영본부장과 이진숙 기획 조정본부장,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을 지휘하고 이들의 보고를 받는 김재철과 안광한, 임진택 등이 공동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밝힌 점으로 볼 때 김재철, 안광한, 임진택, 조규승, 이진숙은 무차별 불법 감청이란 중대범죄를 공모하고 실행한 공동정범의 지위로 단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열람 기록 남지 않는다” 차재실의 중대 발언

이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결정 못지않게 구성원들에게 사전 동의나 고지를 하지 않은 배경도 규명돼야 한다. ‘차재’와 ‘감시’가 설치 목적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어제 기자회견에 앞서 조합 집행부의 항의 방문을 받은 차재실 정보시스템 실장은 “자료가 100퍼센트 서버에 전송된 것은 아니고,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불안이나 동요를 막기 위한 배려 차원”이었다면서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차재실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답변도 했다. 차재실 실장은 “열람 기록은 남지 않는다”고 밝힌 점이다. 최소한의 보안 장치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 불법감청을 해왔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인 동시에, 자료가 임원들에게 수시로 보고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게 하는 답변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사찰 프로그램으로 수집된

정보들은 차 실장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열람이 가능하다.

징계와 대기발령 리스트, 불법감청과 관련 있나?

문제의 ‘무차별 불법 감청’ 프로그램이 몰래 설치되고 불과 열흘 뒤부터 김재철 일당은 징계와 대기발령의 망나니 칼춤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당시 대기발령자를 선별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놓고 김재철 일당이 사내 사찰활동을 벌여온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기도 했다. 조합은 차 실장의 자리 부근에 있을 서버에 이 모든 비밀을 풀어줄 자료들이 지금도 저장돼 있을 것일 만큼 김재철 일당이 중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합 역시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만큼 선별은 중거 인멸은 범죄의 또 다른 물증이 돼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퇴진 촉구’ 생활비 모금운동 시청자 김재철과 대면



계절은 완연한 가을을 향해가고 있지만 시청자들의 온정은 여전히 뜨거워처럼 따스한가? 어제(6일), 용인 신갈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시청자 정식씨가 김재철 퇴진을 위한 모금함을 들고 김재철 사장을 찾아 나섰다. 총 모금 액수는 3만 6220원. 김재

철이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악행을 감안하면 MBC 사장을 물리 난 뒤 생활비의 일부라도 보태쓰라고 걱정해주는 시청자의 손길은 과분해도 너무 과분하다.

정씨가 먼저 찾아간 곳은 ‘멘봉’에 빠진 김재철 사장의 정신적 보호자,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난색을 표하는 방문진 관계자와 실랑이를 하던 철나,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따스한 모금의수혜자가 될 김재철 사장이었다. 비서의 제지를 받아가며 5분여간 실랑이를 했지만 끝끝내 모금함은 정씨의 손에 남았다.

생활비 걱정 말고 어서 퇴진하라는 뜻

면 길을 달려온 정씨에게 돌아온 것은 김 사장의 따뜻하게 굳은 얼굴이었다. 정씨는 6월 말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모금함을 설치했다. “혹시나 생활비가 모자라서 퇴진을 못하나?”하는 생각에서였다. <MBC 뉴스데스크>의 열혈 시청자였던 정씨는 김재철 사장 취임 후, 뉴스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와 같은 모금을 결심했다고 한다. 김재철이 퇴진해야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고민에서 나온 퍼포먼스였던 것이다. 정씨와 같은 MBC 시청자들도 동참해, 김재철 퇴진과 MBC 정상화를 위해 100원, 200원씩 정성을 보탰다. 어찌면 따스한 마음을 가진 시청자들이 많기에 이제라도 김재철은 안심하고 퇴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스했던 시청자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기 전에어서 물려가시라.

김재철의 교묘한 지역 장악 마수 노골화 주총 소집권자 변경과 이사 수 확대에 숨은 꼼수

파업 중단 50일 동안 서울에 집중됐던 김재철의 탄압이 이제 지역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기 시작했다. 오늘 오전 9시30분 광주를 필두로 열리는 지역사의 임시 주총회가 그 계기다. 이번 임시 주총에는 각 지역사의 정관변경과 이사 선임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다. 정관상 주총소집권한을 대표이사 단독에서 이사로 확대하는 것과, 지금은 3명뿐인 12개 지역사의 이사를 한 명 더 선임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지역사의 ‘대표이사가 주총이나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각 이사들이 소집할 수 있다’로 규정하려는 것은 지금도 현저히 종속되어 있는 지역사 대표이사의 권한을 무력화 시키면서 본사의 의도를 즉각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통제와 압박으로 자유롭지 못한 지역사의 자율경영을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말살하겠다는 뜻이다.

주총과 이사회의 완벽한 장악 의도

무리한 시도를 강행하는 근저에는 지난 대구 MBC의 사장 사퇴로 인해 주총 소집도 못하고 공백이 생겼던 아픔(?)을 근본적으로 극복해 내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또한 대표이사 유고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중 ‘기타의 사유’라는 조문을 추가해 이사에게 직무대행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또한 지역사의 자율경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처사라 할 수 있다. 또한 임시 주총 개최 일정도 본사가 100% 지분을 모두 갖고 있는 5개사를 우선해서 급하게 진행

하는 것도 불순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소주주가 있는 13개사의 경우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17일에 개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MBC를 떠나야 할 백종문이 지역 MBC 이사로?

현재 3명인 지역 12개사의 이사를 4명으로 추가하려는 것에 숨겨져 있는 추악한 의도는 역시 같은 것이다.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회 소집을 대표이사가 반대하더라도 ‘과반의 이사회 소집 요구’로 변경해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이사로 추가 선임하려는 인물이 사장 최초로 실시한 본부장 의견조사에서 서울지부 조합원 94%의 불신을 받은 백종문 편성본부장이라는 사실이 더욱 놀라울 뿐이다.

사규보다 강력한 단협 합의정신까지 위배

이는 지난해 어렵게 개정한 단체협약 85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지난 단협보다 상당 부분을 양보하면서도 지역 MBC의 자율경영과 노사합의 존중이라는 조항을 단체협약 사상 처음으로 포함시킨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릉과 삼척의 강제통폐합을 또다시 시도함과 더불어 이제는 정관까지 개정해 완벽하게 지역 사를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조합의 경고를 무시하고 문제의 정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지역 구성원들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됨을 경고한다.